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세무2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68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4년 11월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지방세징수법」 제9조의 ‘결손처분’ 용어가 ‘정리보류’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관련 조문 조항의 용어를 상위법에 일치시키려함

2. 주요내용

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

- “결손자료” → “정리보류 자료” (안 제2조제5항제2호나목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징수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 : 2024.9.19. ~ 2024.10.10. (21일간)
- 2)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- 3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4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5항제2호나목 중 “**결손자료**”를 “**정리보류 자료**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지급대상) ① ~ ④ (생략)	제2조(지급대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2항제1호, 제4항제2호에 따른 “특별한 공적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	2. ----- ----- ----- --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<u>결손자료</u> 의 제공	나.----- ----- <u>정리보류</u> <u>자료</u> -----
다. ~ 자. (생략)	다. ~ 자. (현행과 같음)
⑥ · ⑦ (생략)	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 용어 변경으로 비용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』 제11조2항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상위법인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용어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의 용어를
단순 변경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

4. 작성자

기획재정국 세무2과장 윤찬구